

1. 개정 이유

-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 제27조에 따라 특정 용도로 취급 시 위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은 제한물질로 지정
 - 크롬(6+)화합물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물탱크 방청도료 및 페인트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
- 건축자재용 컬러강판에 대하여 대체물질 적용에 따른 옥외폭로시험 등 관련 업계에서 취급제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그 적용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- “크롬(6+)화합물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” 중 “크롬산 스트론튬”에 한하여 개정 내용(페인트 용도 취급제한, '21.12.29. 개정)에 따른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 제한의 적용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개정
 - 제조, 수입 제한 : 2023년 1월 1일 → 2025년 1월 1일
 -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 제한 : 2023년 7월 1일 → 2025년 1월 1일

제한물질 · 금지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(안)

「제한물질 · 금지물질의 지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「제한물질 · 금지물질의 지정」 부칙(환경부고시 제2021-295호) 제1조제2호 후단에 “다만, 크롬산 스트론튬(Strontium chromate; 7789-06-2)을 컬러강판·코일의 표면에 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(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) 및 이 목적으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 제한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”를 신설한다.

